성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「농촌진흥법」제2조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 성주농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농업경영인 양성과 농업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로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주군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(안 제1조)
○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3조)
○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)
○ 교육시간 및 과정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
○ 입학자격, 수료기준, 교육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～제14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농촌진흥법」 제2조 4항, 제19조, 제21조
○ 기　　타 : 조례안예고(2019. 4. 25 ~ 2019. 5. 16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농촌진흥법」에 따라 우리군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성주군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써,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우리군 농업인대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